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폭력 행위 등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업무배제 근거 마련 〉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93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폭력 행위 등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업무배제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5. 2. 24.
3. 회부연월일: 2025. 2.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초등생 사망사건이 발생함. 이 교사는 초등생 사망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에 동료 교사에게 폭력성을 보이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으나 학교가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 이 사건을 발생한 측면도 있음. 따라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직위해제 사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를 추가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다만,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등이 안전하게 수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Ⅲ. 검토의견

□ 폭력 행위 등으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에 대한 직위 해제 및 업무배제 근거 마련

개정안은 직위해제 사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등이 안전하게 수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u>자에게</u>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략) <u><신설></u>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u>자(제1항제5호의 자는 제외한다)</u> 에게----- ----- -----. ⑤ (현행과 같음) ⑥ <u>학교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u>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긴급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	--

먼저, 개정안 제44조의2제1항제5호는 직위해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를 추가함.

사람의 신체에 폭력 행위를 가하거나 폭력 행위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은 「형법」상 상해 또는 폭행의 범죄행위¹⁾에 해당하므로,

1)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현행법 제4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로 직위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 사유로 신설한 것은, 폭력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폭력 행위 등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 교원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직위해제 사유의 주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자의 보수 및 승진을 일부 제한하는³⁾ 직위해제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가.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 3)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승급 제한 및 봉급 감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감액 지급 또는 미지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경력평정대상기간 제외 등이 적용됨.

* 상세내용은 【참고자료】 직위해제 관련 보수 및 인사관리 법령 참조

또한, 개정안 제44조의2제4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대상에서, 신설된 직위해제 사유(제4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의 적용대상은 현행법의 직위해제 사유 중 제44조의2제1항제1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해당자에 한정되므로,⁴⁾ 신설된 직위해제 사유(제44조의2제1항제5호) 해당자를 제외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 제44조의2제6항은 신설된 직위해제 사유(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치(이하 “업무배제”라고 함)를 신설함.

구체적으로 업무배제는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 임용권자가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업무배제를 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음.

4)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에서 업무배제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업무에서 긴급하게 배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설된 것으로 보임.

다만, 업무배제는 긴급한 필요를 고려하여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임용권자가 조치하거나 학교장이 조치하고 임용권자가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학교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오남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배제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학교의 장 등이 교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분리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표 1] 업무배제, 분리조치가 포함된 개정안 현황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주요 내용
1	교육공무원법 (제2208225호)	조정훈 의원	2025.2.17./ 2025.2.18.	• 학교의 장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하되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직무배제를 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 가능(안 제44조의2)
2	교육공무원법 (제2208390호)	김문수 의원	2025.2.24./ 2025.2.25.	• 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임용권자 보고 (안 제44조의신설)
3	교육공무원법 (제2208645호)	윤상현 의원	2025.3.4./ 2025.3.5.	• 학교의 장은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을 업무배제, 분리조치 가능(안 제44조제2항)
4	대안교육기관법 (제2208531호)	백선희 의원	2025.2.27./ 2025.2.28.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17조의2)
5	사립학교법 (제2208533호)	백선희 의원	2025.2.27./ 2025.2.28.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53조의6)

구분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부일	주요 내용
6	사립학교법 (제2208807호)	김문수 의원	2025.3.11./ 2025.3.12.	• 학교의 장은 교원이 학교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분리조치 후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고(안 제58조의3 신설)
7	초·중등교육법 (제2208524호)	백선희 의원	2025.2.27./ 2025.2.28.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으로 학생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안 제20조의4)
8	초·중등교육법 (제2209769호)	김대식 의원	2025.4.11./ 2025.4.14.	• 학교의 장은 교원 간 또는 교원과 학생 간에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교내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 분리 등 적절한 조치 가능(안 제20조의2 등)
9	학교폭력예방법 (제2208139호)	강경숙 의원	2025.2.13./ 2025.2.14.	• 학교전담경찰관이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시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하고 긴급 분리 조치 가능(안 제20조의6)

주: 개정법률안명 - 의안번호 순으로 정렬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 (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4항) 직위해제 사유 신설: 신중검토 -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긴급상황 발생 시 학교장에 의한 ‘긴급 분리조치’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동 조치는 직위해제*와 달리 신분상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학생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직위해제 사유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함. * 직위해제는 보수 감액, 승진제한, 승진소요최저연수 불산입 등 불이익 효과를 수반 - 또한, 현행법으로도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일정한 비위행위로 인해 조사·수사 중인 자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직위해제 사유를 신설할 실익이 적음. • (안 제44조의2제6항) 업무배제 규정 신설: 일부수정 -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수 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들과 병합하여 심사한 뒤 종합적인 법률개정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교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다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면서도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189

<참고자료>

○ 직위해제 관련 보수 및 인사관리 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u>직위해제</u>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제4호·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③ 정직·감봉·<u>직위해제</u>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7조(정근수당)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정직·감봉·<u>직위해제</u>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0조(가족수당) ⑨ 강등, 정직, 감봉, <u>직위해제</u>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⑥ 강등·정직·감봉·<u>직위해제</u>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의2(주택수당) ② 강등·정직·감봉·<u>직위해제</u>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정직·<u>직위해제</u>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강등·정직·<u>직위해제</u>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않되, 특수업무수당 중 <u>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u>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이하 내용 생략)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 중 직위해제 부분

구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30퍼센트 (연봉월액의 2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60퍼센트	수당액의 70퍼센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1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경력기간의 계산) ①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